

의안번호	2220618
의 퇴 인	구자근의원
회 답 일	2026.9.23.
추 계 번호	26F409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도급·용역·위탁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04조의37 (도급·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)	2030년 12월 31일까지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의 10%를 세액공제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4조의37 (도급·용역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)	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호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지출하는 경우 지출액의 10%를 세액공제함에 따라 법인세 감소가 예상됨

- 현행은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손금에 산입함
- 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 한도의 합계로 구성
 - 기본한도: 일반기업 1,200만원/ 중소기업 3,600만원 × $\frac{\text{해당사업연도의 개월수}}{12}$
 - 수입금액 한도: 매출액 × 적용율*

구분		적용율
수입금액	100억원 이하	3/1,000
	100억~500억원 이하	2/1,000
	500억원 초과분	0.3/1,000

-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내국법인이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규모에 대한 자료가 필요
- 그러나, 내국법인이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 규모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여,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 세수효과 추계 곤란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내국법인이 도급·용역·위탁 등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에 대한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 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지원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지원	02-6788-4839	jwpark1209@assembly.go.kr